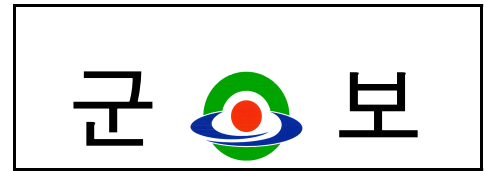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84호 2019. 8. 26.(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974호)
-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980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예 천 군



1.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2018. 12.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사적이해관계 신고대상 추가 (안 제5조제1항)

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보완 (안 제5조의6제1항)

○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추가
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조항 신설 (안 제13조의3)

○ 인·허가 신청 접수 지연·거부, 부당한 지시·요구, 권리·권한의 부당 제한
등 갑질행위

라.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 요구에 대한 처리 조항 신설 (안 제14조의4)

- 부당한 출장지원 요구, 과잉의전 제공 요구를 받았을 때 피감독기관의 신고 서식 마련

마.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대상 추가 (안 제18조)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2개 사항 추가

바. 행동강령 교육 내용 구체화 (안 제22조제3항, 제4항)

- 향응·금품 수수금지,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금지 등 교육 내용 구체화

3.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5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 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046 팩스 054-650-6059
- 전자우편 : addadd@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자 치 법 규 명 :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무원 자신과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군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공무원 자신과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공무원 자신이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5조의6제1항 본문 중 “사행성 오락을 같이”를 “사행성 오락,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

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피감독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 제목 “(금전의 차용 금지 등)”을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알선·청탁”을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로,
“경조사의 통지”를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하며”를 “수립하고”로, “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군수가 정하는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u>공무원 자신과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
<u><신 설></u>	8. <u>군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
<u><신 설></u>	9. <u>공무원 자신과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
<u><신 설></u>	10. <u>공무원 자신이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u>

7. (생략)

② ~ ⑧ (생략)

제5조의6(직무관련자인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군수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신설>

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1.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의6(직무관련자인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

-----사행성 오락,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

<신 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 ⑤ (생략)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6., 개정 2018.9.20.>

제22조(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

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제22조(교육) ① -----

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신 설>

----- 수립하고-----

---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

(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9조(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6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제1항제6호,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2.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3.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7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제1항제7호,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2.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3.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12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제1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의 유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3조(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말한다)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예 천 군



1. 제안이유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9.7.1.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귀농인 지원에 관련한 사후관리 기간을 각 사업별 지침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현행 :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변경 :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나. 목적 내 근거 상위법 변경

-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귀농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 수정 (안 제2조)

- 만 55세 미만인 자 → 만 65세 이하이면서 이주 직전 1년간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

라. 귀농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변경 (안 제11조제1항제2호)

- 지원 후 5년 이내 → 각 사업별 사후관리기간 이내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9월 16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농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기타

- 보내실 곳

- 주소 : 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292, 팩스 : 054-650-6269
- 전자우편 : ycgc0227@korea.kr

라.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를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40조에 따른”을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귀농자”를 “귀농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귀농인”이란 65세 이하이면서 이주하기 직전에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던 사람으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예천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귀농자”를 “귀농인”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귀농자 지원 체계”를 “귀농인 지원 체계”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귀농자”를 “귀농인”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귀농업무 담당주사가”를 “귀농 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귀농자”를 각각 “귀농인”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귀농자에 대한 지원”을 “귀농인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귀농자가”를 “귀농인이”으로 하고, 제2항 중 “귀농자”를 “귀

농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귀농자”를 각각 “귀농인”으로 한다.

제8조 중 “귀농자가”를 “귀농인이”으로 한다.

제9조 중 “귀농자”를 “귀농인”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귀농자”를 “귀농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귀농자가”를 각각 “귀농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년”을 “각 지원사업별 사후관리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귀농자로”를 “귀농인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농자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 제2호 규정에 따른 귀농자는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귀농인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u> 제1조(목적)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u>」(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40조에 따른 예천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u>귀농자</u>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u>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u> 2. “<u>귀농자</u>”란 55세 미만인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예천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u>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라 ----- ----- ----- <u>귀농인</u>----- -----.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농업”이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 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u>귀농인</u>”이란 65세 이하이면서 이주하기 직전에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던 사람으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예천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3.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
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
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5. (생략)

제2장 귀농자 지원 체계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
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관련공무원, 관내 농
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와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
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
는 자중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으
로 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 (생략)

⑤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
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귀농인-----

-----.

4. 5. (현행과 같음)

제2장 귀농인 지원 체계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
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귀농인 -----

④ (현행과 같음)

⑤ ----- 귀농 업무 담당 팀장이

-----.

제4조(위원회의 기능) -----

1. 귀농인 -----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
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생 략)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
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
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
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귀
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
한 지원

② (생 략)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자

2. 귀농인-----
--

3. 귀농인-----

4. 귀농인-----

5. (현행과 같음)

제3장 귀농인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① -----
귀농인이 -----

-----.

② ----- 귀농인-----

-----.

제7조(사업의 지원) ① ----- 귀농
인-----

-----.

1. ~ 4. (현행과 같음)

5. --- 귀농인-----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시설 보조) ----- 귀농인이

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
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
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
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

제9조(자녀학자금 지원) -----

귀농인-----

-----.

제10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 귀농인-----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

-----.

1. 귀농인이 -----

한 때	----
2. 지원을 받은 후 <u>5년</u>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2. ----- <u>각 지원사업</u> <u>별 사후관리 기간</u> -----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군수가 <u>귀농자로</u> 존속 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6. ----- <u>귀농인으로</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